

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폭력방지
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7 월 3 일

여 수 시 장

2024/07/03



여수시 조례 제2104호

붙임 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1부

여수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폭력”이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.
2. “여성폭력 피해자”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2차 피해”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
4. “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

나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
다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
라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,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

제3조(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

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전라남도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(이하 “여성폭력방지정책”이라 한다)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
2.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3.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
4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
5.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
6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,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지원
2.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3.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
4. 피해자 보호 및 법률, 의료,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
5.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

6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·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
3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4.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5.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.
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2.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
- 가.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
- 나. 여수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
- 다.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- 라. 법원, 검찰, 경찰, 보호관찰소, 대한법률구조공단, 지방변호사회
- 마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·단체 또는 시설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기관·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
3. 위원이 질병·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2차 피해 방지)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7조(예방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

2. 여성폭력 관계 법령

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, 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.

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8조(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,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여수시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여수시 아동·여성안전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여수시 아동·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제7조의 제정 규정에 따른 여수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여수시 아동·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제정 규정에 따라 여수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